

2025학년도 경상국립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요강

《 원서접수: 2024. 7. 8.[월] ~ 7. 12.[금] 16:00 》



- 2025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상국립대학교 입학처 누리집(<https://new.gnu.ac.kr/>)을 통해 공지합니다.
- 원서접수 전 반드시 모집요강을 숙지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우)528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GNU컨벤션센터 2층 입학처 / [TEL] 055)772-1115

차례

2025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요강

1. 지원자 유의사항	1	8. 선발방법	14
2. 전형일정	4	9. 원서접수 및 전형료	15
3.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5	10. 합격자발표 및 등록	17
4. 지원자격	6	11. 대학생활 주요안내	19
5. 지원자격 심사기준	8	12. 각종서식	21
6. 제출서류	11	■ 학과사무실 및 학사안내 연락처	31
7. 전형방법	14		



1. 지원자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대학별 고사(면접고사), 합격사항, 등록금 납부 등 입학전형 관련 공지는 경상국립대학교 **입학안내 누리집** (<http://new.gnu.ac.kr>)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지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원서접수 이후 연락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접수처의 안내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이후에는 경상국립대학교 **입학안내 누리집**(<http://new.gnu.ac.kr>) Q&A게시판의 공지에 따라 해당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연락 두절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학전형 성적 및 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신입생은 병역복무, 질병 등으로 인한 휴학을 제외하고는 입학 연도의 첫 학기에 휴학이 불가합니다.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 사정원칙 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실시하고, 접수가 완료된 경우 접수 취소나 지원 사항 수정이 불가능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자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하여야 합니다.
- 입학원서의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지원자 연락처는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서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허가가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가 미비되어 전형이 불가능한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는 정해진 기한 내에 도착해야 하며, 우편 사고(미도착, 지연 도착) 발생에 대해 본교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도착 여부를 지원자 본인이 입학안내 누리집(<http://new.gnu.ac.kr>)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때에는 원본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면접고사

- 원서접수 과정에서 미리 공지된 면접고사 일정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자 개인의 상황에 따른 일정 변경은 불가합니다.
- 수험생은 **입학안내 누리집** (<http://new.gnu.ac.kr>)에 공고된 고사장 안내, 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숙지해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고사장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수험표 및 사진이 부착된 공적신분증(주민등록증,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고사시간 동안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고사시간 중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고사장 본부(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수험표를 출력하여 고사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사 당일 휴대폰, 녹음기, 카메라 등의 전자기기는 일절 소지할 수 없으며, 고사 종료 이후라도 고사 중 휴대폰, 녹음기, 카메라 등의 전자기기 사용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형사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면접고사에 결시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기상이변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고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시하므로 모든 수험생은 고사 시각에 늦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합격자 발표는 **경상국립대학교 누리집**에 공고하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내된 절차에 따라 등록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를 지원자 본인이 누리집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미등록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충원 합격 후보 순위에 따라 충원하며, **입학안내 누리집** (<http://new.gnu.ac.kr>)에서 공지하므로 지원자가 확인(조회)하여야 합니다.
- 합격 취소, 등록 포기 및 등록금 환불 요청에 관한 사항은 본교 입학과(☎ 055-772-1115)로 연락하여 반드시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입학안내 누리집**(<http://new.gnu.ac.kr>)에서 **등록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수시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관련 유의사항

- 수시모집 지원 횟수는 원서접수의 “건수”를 기준으로 최대 **6회로 제한**되며,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 수험생이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원서 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에 접수된 원서는 모두 접수 취소 처리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학 무효 처리됩니다.
(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며,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입학하는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수시모집에 해당하며, 수시모집(최초 합격자 및 충원합격자)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타 대학 및 본교의 다른 모집 시기(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금지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합니다.
- 수시모집에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 카이스트, 경찰대학, 3군 사관학교, 광주과기원, 대구과기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기타

- 최종 등록마감 이후, 입학 학기가 같은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 합격, 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입학결정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학 후에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해 전형자료에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별표2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 본교 및 타 대학에서 허위 또는 부정의 사유로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지원 및 입학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안내

1. 대학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합니다.

- 가. 지원자 정보: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학교(력)정보, 환불 은행계좌정보 등
- 나. 보호자 정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 다. 학교 정보: 재학/출신 고교명, 고교 전화번호, 주소, 고교 FAX 번호, NEIS 코드 등
- 라. 기타: 추가 연락처 등

2.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의 입학, 장학, 학사, 통계업무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안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공받는 곳		제공목적	제공정보	보유기간
경 상 국 립 대학교	학사지원과	학적부 생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원내용(전형, 모집단위 등), 고교명 등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학생과	장학생 선발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지원내용(전형명, 모집단위 등), 성적자료 등	
	학생생활관	생활관생 선발 (생활관 신청자에 한함)		
	교육혁신처	선이수교과목 수강대상자 선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내용(전형, 모집단위 등), 성적자료 등	
	해당 학과(부) 및 학내 관계 부서	학내 프로그램 등 정보 안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수강신청, 외국어교육, 뉴스레터 발송 등)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학사지도 및 장학생 선발	성명, 생년월일, 전형명, 성적자료 등	
	입학처	교육연구 및 통계분석	수능성적 및 입학 후 성적 등	
	국제어학원	외국어능력 향상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제3자 제 공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내용(전형, 모집단위 등) 등 수험번호, 성명, 지원내용(전형, 모집단위), 전형결과 등	지원 및 등록 위반자 확인 등	
	출신고교	입시결과 안내 등		

3. 관련 법령

-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등
-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등
- 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는 원서접수 시 받고 있으며, 미동의 시 입시 전형 및 추후 학사 등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전형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24. 7. 8.(월) ~ 7. 12.(금) 16:00	■ 인터넷 접수
구비서류 제출		2024. 7. 8.(월) ~ 7. 16.(화) 18:00	■ 제출방법 우편(등기택배) 또는 방문(주말 제외) ※ 2024. 7. 16.(화)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52828)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국립대학교 GNU컨벤션센터 2층 입학과
지원자격 심사결과 발표		2024. 8. 2.(금) 16:00 예정	■ 입학안내 누리집(http://new.gnu.ac.kr) 공지 ※ 개별 통지하지 않음
면접고사		2024. 8. 8.(목)	■ 해당학과 지정장소 ※ 수험표와 신분증 지참
합격자 발표		2024. 8. 30.(금) 16:00 예정	■ 입학안내 누리집(http://new.gnu.ac.kr) 공지 ※ 개별 통지하지 않음
합격자 등록 (온라인 문서등록)		2024. 12. 16.(월) ~ 12. 18.(수) 16:00 까지	■ 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기간 내 본교 누리집에서 확인(출력) 후 등록 ■ 문서 미등록 시 등록포기 처리
충원 합 격 자	발표기간	2024. 12. 19.(금) ~ 12. 26.(목) 18:00 까지	■ 합격자 개별 통지(전화통보) ■ 입학안내 누리집(http://new.gnu.ac.kr)에서 고지서 출력 후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
	온라인 문서등록	2024. 12. 19.(목) ~ 12. 27.(금) 22:00 까지	
(본)등록금 납부		2025. 2. 10.(월) ~ 2. 12.(수) 16:00 까지	■ 입학안내 누리집(http://new.gnu.ac.kr)에서 고지서 출력 후 납부

※ 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 및 (본)등록금을 해당 기간 내 미납부 시 등록포기로 처리됨

※ 합격자 발표, 변경사항 등 모든 공지사항은 본교 입학안내 누리집(<http://new.gnu.ac.kr>)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입학정원 2% 이내)

단위대학	모집단위	입학정원	선발가능인원	단위대학	모집단위	입학정원	선발가능인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46	4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	33	3
	영어영문학부 영어전공	35	3		동물생명융합학부	63	6
	국어국문학과	42	4		식품공학부	50	5
	독어독문학과	29	2		원예과학부	63	6
	러시아학과	31	3		축산과학부	59	5
	민속예술무용학과	17	1		환경산림과학부 (산림환경자원학전공/산림융복합학전공)	70	7
	불어불문학과	30	3		농학과	28	2
	사학과	36	3		스마트농산업학과	30	3
	중어중문학과	38	3		식물 의학과	28	2
	철학과	31	3		환경생명화학학과	28	2
사회과학대학	한문학과	30	3		환경재료과학과	30	3
	경제학부	61	6	법과대학	생물산업기계공학과	31	3
	사회복지학부	50	5		지역시스템공학과	31	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5	2		법학부 (법학전공/법조법학전공)	66	6
	사회학과	32	3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15	1
	심리학과	31	3		일어교육과	15	1
자연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30	3		체육교육과	20	2
	행정학과	39	3	해양과학대학	해양수산경영학과	27	2
	생명과학부	85	8		해양식품생명 의학부 (해양식품공학전공/수산생명의학전공)	53	5
	수학물리학부 (수학전공/물리전공)	64	6		해양경찰시스템학과	28	2
	식품영양학과	50	5		해양생명과학과	28	2
	의류학과	31	3		기계시스템공학과	25	2
	정보통계학과	31	3		스마트에너지기계공학과	30	3
	제약공학과	29	2		조선해양공학과	28	2
	지질과학과	31	3		해양토목공학과	27	2
	항노화신소재과학과	30	3		해양환경공학과	28	2
	화학과	40	4	건설환경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	37	3
경영대학	경영학부	97	9		인테리어재료공학과	33	3
	회계세무학부 (회계학전공/세무학전공)	100	10		조경학과	38	3
	경영정보학과	38	3		환경공학과	37	3
	국제통상학과	89	8		디자인비즈니스학과	28	2
	스마트유통물류학과	37	3		메카트로닉스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스마트전력공학전공)	50	5
공과대학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건축시스템공학전공)	64	6	IT공과대학	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융합전자공학전공)	98	9
	나노·신소재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39	3		컴퓨터공학부 (컴퓨터학전공/CT융합전공)	102	10
	나노·신소재공학부 금속재료공학전공	39	3		반도체공학과	38	3
	나노·신소재공학부 세라믹공학전공	39	3		소프트웨어공학과	26	2
	산업시스템공학부 (산업공학전공/산업정보공학전공)	66	6		전기공학과	44	4
	건축학과	51	5	우주항공대학 자율전공학부	제어로봇공학과	41	4
	도시공학과	38	3		AI정보공학과	30	3
	미래자동차공학과	38	3		항공우주공학부 (항공우주시스템공학전공/항공우주모빌리티전공)	174	17
	에너지공학과	29	2		인문사회계열	21	2
	토목공학과	43	4		자연과학계열	20	2
	화학공학과	40	4	계	89명 이내		

※ 기재되지 않은 학과는 선발하지 않음

※ 정원 제한 없이 모집하는 전형은 위 정원에 관계없이 선발할 수 있음

4. 지원자격

가. 입학정원 2%이내 모집(정원외): 중·고교과정 **일부**를 외국 학교에서 이수한 자

공통 학력조건

- 국내·외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 외국소재 고등학교에서 국내 고등학교로 전학하여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단위: 년)

구 분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 · 근무 · 체류기간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체류	근무/사업/영업	체류	체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의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사업/영업 중이거나 근무/사업/영업 후 귀국한 자의 자녀로서, 해외근무/사업/영업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3	학생 재학 기간 각각의 1개년마다 3/4이상	3	학생 재학 기간 각각의 1개년마다 2/3이상	학생 재학 기간 각각의 1개년마다 2/3이상

※ 기존의 영주교포자녀,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유치과학자/교수요원 자녀, 기타 재외국민(자영업자, 현지법인 근무자, 해외선교활동, 해외 파견 교직원)의 자녀 모두 지원자격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부모의 유학, 교육, 연수, 출장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재외국민 전형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 부·모·지원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순수)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학정원 제한없는 모집(정원외): 초·중등과정 전부■ 외국 학교에서 이수한 자

공통 학력조건

- 외국에서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 1개 국가에서 초·중등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외국의 12년 미만 학제도 인정함
 - ※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하여야 하며, 12년 교육과정 중 국내 학교에 조금이라도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단위 : 년)

구 분	지원자격	학 생	
		재학	체류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으로서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 본교 국어문화원 한국어 연수과정 1학기 이상 수료 후, 수료증(평가점수 140/200점 이상)을 취득 - 영어능력시험: TOEFL(PBT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점 이상	12	-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으로서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 본교 국어문화원 한국어 연수과정 1학기 이상 수료 후, 수료증(평가점수 140/200점 이상)을 취득 - 영어능력시험: TOEFL(PBT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점 이상 ※ 부, 모, 학생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2	-
전 교육과정 이수 후 귀화허가를 받은 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12	-

다. 입학정원 제한없는 모집(정원외): 북한이탈주민

구 분	지원자격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동등 이상 학력을 취득한 자 (국내 검정고시 인정)

5. 지원자격 심사기준

구 분	주 요 해 설	
입학허용 기간	고등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 초)부터 본교 학기 시작 전일(2025.2.28.) 기준 2년 6개월 이내 예) 2023년 3월 1일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학생의 경우 본교 학기 시작 전일(2025.2.28.) 기준 2년이므로 입학 허용 기간에 해당함 ※ 「입학정원 제한 없는 모집」은 해당 없음	
고등학교 졸업 자격인정 기준시점	본교 입학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 개시 전일 다만,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 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	
외국학교 인정기준	① 부모의 근무(거주)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 [다만, 제3국 소재 학교 재학은 부모 근무 국의 지역, 종교, 공산권(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학의 심사과정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 ②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재학한 기간만 인정함(유아원, 유치원, 국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 학습,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등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재학은 제외	
해외근무자의 자녀	해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상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 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상 3년(1,095일) 이상 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 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 재학기간	①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②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해외 체류일수 조건	①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②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③ 체류일 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체류조건에 예외는 없으며 학기종료일 이후 학사일정이 없는 경우(방학 등)에도 체류기간의 축소변동은 없음

구 분		주 요 해 설														
재학 기간 인정 기준	공통	① 학년(Academic Year) 기준이며,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3학기 또는 4학기 이수를 1년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② 해외 졸업(예정) 자의 경우, 졸업(예정) 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까지 해외 재학 기간으로 인정 ③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1)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2)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 가능함 3)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④ 우리나라와 학제 차이로 발생하는 재학 기간의 부족분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⑤ 초·중·고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 12년 과정의 기간 중 부족한 학교 과정 기간 만큼 해당국 대학과정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함 ⑥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서는 인정하지 않음(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⑦ 조기졸업, 월반, 외국의 학제 차이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학제와 비교하여 본교 「지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함 ⑧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 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정원 2%이내 모집	①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3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3년 이상 재학한 기간을 말함 ② 외국 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 국내 중학교 과정으로 편입하거나, 국내 고등학교 과정에 편입학이 아닌 신입학한 경우, 해당국에서의 고등학교 과정은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학생의 지원자격이 되는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근무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의미함														
	전 교육과정 이수자	① 12년 교육과정 중 국내 학교에 조금이라도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 인정되지 않음 ②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③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해외 한 국가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학제가 12년 미만이라도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 ■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table border="1"> <thead> <tr> <th>학년제</th><th>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10학년 이하</td><td>미인정</td><td>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td></tr> <tr> <td>11학년제</td><td>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td><td></td></tr> <tr> <td>12학년제</td><td></td><td></td></tr> <tr> <td>13학년 이상</td><td>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td><td></td></tr> </tbody> </table>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구 분	주 요 해 설																	
부모의 해외 - 체류기간 - 근무기간	지원자의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외국학교 재학 인정기간)에 보호자가 체류·근무한 기간(지원자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 인정) ※ 체류조건에 예외는 없으며 학기종료일 이후 학사일정이 없는 경우(방학 등)에도 체류기간의 축소변동은 없음 <table><tr><td>체류기간</td><td>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일 수를 제외한 기간</td></tr><tr><td>근무기간</td><td>증명서상(재직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 발령일까지의 기간 (단,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하고 교육, 연수, 출장 등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td></tr></table>	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일 수를 제외한 기간	근무기간	증명서상(재직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 발령일까지의 기간 (단,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하고 교육, 연수, 출장 등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일 수를 제외한 기간																	
근무기간	증명서상(재직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 발령일까지의 기간 (단,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하고 교육, 연수, 출장 등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해외파견 근무자의 자격인정 범위	<table><tr><td>공 무 원</td><td colspan="2">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td></tr><tr><td>상사직원</td><td colspan="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 의사, 언론기관 특파원</td></tr><tr><td rowspan="2">외국정부 및 국제기구</td><td>외국정부</td><td>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 기관 (다만,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td></tr><tr><td>국제기구</td><td>정부 간의 국제조약, 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다만, 기타 비정부 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td></tr><tr><td>현지법인 근 무 자</td><td colspan="2">외국 근무 상사직원의 범위 외의 근무자로, 외국 현지법인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td></tr><tr><td>현 지 자영업자</td><td colspan="2">외국에서 자영업 허가를 얻어 3년 이상 영업 중이거나 영업하고 귀국한 자</td></tr></table> ※ 교육, 연수, 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 또는 해외취업(공무원의 고용휴직 포함)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함	공 무 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상사직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 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외국정부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 기관 (다만,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국제기구	정부 간의 국제조약, 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다만, 기타 비정부 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현지법인 근 무 자	외국 근무 상사직원의 범위 외의 근무자로, 외국 현지법인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		현 지 자영업자	외국에서 자영업 허가를 얻어 3년 이상 영업 중이거나 영업하고 귀국한 자	
공 무 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상사직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 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외국정부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 기관 (다만,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국제기구	정부 간의 국제조약, 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다만, 기타 비정부 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현지법인 근 무 자	외국 근무 상사직원의 범위 외의 근무자로, 외국 현지법인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																	
현 지 자영업자	외국에서 자영업 허가를 얻어 3년 이상 영업 중이거나 영업하고 귀국한 자																	
해외 체류기간 및 해외거주기간 산정방법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를 종합 검토, 판단하여 기간을 산정																	
외국인 인정기준	기준 시점: 원서접수 개시일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② 이중국적자(복수국적자), 무국적자는 외국인에서 제외																	

※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소명자료[서식8]를 제출받아 지원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함.

6. 제출서류

가. 입학정원 2% 이내

1) 공통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 고
1	입학원서 [서식 1]	인터넷 접수 후 출력 후 <u>자필 서명</u> 하여 제출
2	수학기간기록표 [서식 2]*	
3	부모 체류기간 기록표 [서식 3]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추후 졸업증명서 제출
5	초·중·고 전 과정 재학 및 성적증명서	국내: 학교생활기록부
6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학생)	
7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8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서식 6]	
9	여권 사본(부, 모, 학생)	
10	재외국민등록등본(부, 모, 학생)	
11	제3국 수학인정서 [서식 5]	해당자에 한함
12	해외 학교 학기 기록표 [서식 7]	

* 전·출입이 빈번하여 인터넷 접수시스템에 입력하기 어려운 경우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2) 지원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① 영주교포자녀	1) 영주권 사본(부, 모, 학생) 2)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4) 해외 재직 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5)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지원자의 해외 재학기간 중
② 해외근무 공무원자녀	1)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③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1)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2) 해외지사설치 인증허가서 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 해외지점설치인증·허가서/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사본은 반드시 본사나 외국환은행의 원본대조필 이 있어야 하며, 복사본은 인정하지 아니함 또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는 파견(근무)기간 이전에 신고(수리)된 것이어야 하며, 재직(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파견국 법인(지사/공장)명과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에 나오는 법인(지사/공장)명이 일치되어야 함

구분	제출서류
④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자녀	1)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⑤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1)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2) 해당 기관장 초청서 또는 추천서
⑥ 현지 자영업자 자녀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지원자의 해외 재학기간 중
⑦ 현지 법인 근무자 자녀	1)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해외 재직 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지원자의 고교 재학기간 중 보호자의 근무내역 확인 서류
⑧ 선교사 자녀	1)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2) 해당 종교단체장의 해외 파견 추천서
⑨ 해외파견 교직원 자녀	1)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2) 해당 기관장 초청서 또는 추천서

나. 전 교육과정 이수자

1) 공통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 고
1	입학원서 [서식 1]	인터넷 접수 후 출력 후 <u>자필 서명</u> 하여 제출
2	수학기간기록표 [서식 2]	
3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추후 졸업증명서 제출
4	초·중·고 전 과정 재학 및 성적증명서	
5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6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학생) [서식 6]	
7	신분증 사본(학생)	
8	해외 학교 학기 기록표 [서식 7]	

2) 지원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①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학생)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②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2) 외국국적 증명서: 학생 여권사본 또는 시민권 사본 등 3)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에 한함 4) 유학경비부담서약서 [서식 4] 5) 재정보증인의 미화 \$18,000 이상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국내송금·환전증명서 6)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③ 결혼이주민	1) 출입국 사실증명서(학생) 2) 국적취득 확인서 또는 귀화 허가 통지서 3)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학생기준 발급)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다. 북한이탈주민

구분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통일부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시청, 군청, 구청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2) 고교졸업 학력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시·도 교육청 발급)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본인의 학력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3)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공통 및 추가 서류의 각 연번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을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원본 서류를 반환받고 싶을 경우 직접 내방해서 담당자의 서류 확인 작업을 거친 후 회수하시거나, 우편으로 원본 및 사본 서류를 보내주시고 원본 서류를 반환받고 싶은 주소지를 기입하고 등기 우표를 붙인 봉투를 같이 동봉해주시면 반송해드리겠습니다.
-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격 등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제출해야 하며, 제출에 응하지 않을 시 지원자격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를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을 하여 **2025. 2. 16.(금)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 발급 서류의 경우 학교장 직인으로 갈음함)

- 최종합격자 중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2025. 2. 16.(금)까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5년 2월 28일까지 포함해야 지원 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지원자격 관련 서류 일체를 입학 전일까지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학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전형방법

구분	전형요소	비 고
모든 학과	면접 100%	

8. 선발방법

가. 지원자격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자격 적격자에 한하여 면접고사를 실시

나. 면접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선발

다. 선발대상인원이 총 입학정원의 2%를 초과하는 경우

- ① 선발대상인원이 있는 모집단위별로 우선 1명씩 선발
- ② 전체 지원자의 총점 순으로 총 입학정원의 2%까지 선발(모집단위별 최대 선발 가능인원의 범위 내)
※ 나머지 불합격 처리자가 아닌 전원을 예비합격자로 선발

라. 불합격 처리기준

- ① 지원자격 미달자
- ②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전형이 불가능한 자
- ③ 면접고사에 응하지 않은 자
- ④ 면접고사 점수의 60% 미만 취득자

마. 동점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순위를 부여함

- 1순위: 면접고사 제2영역(전공 관련 지식) 성적이 높은 자
- 2순위: 장기간 해외 수학을 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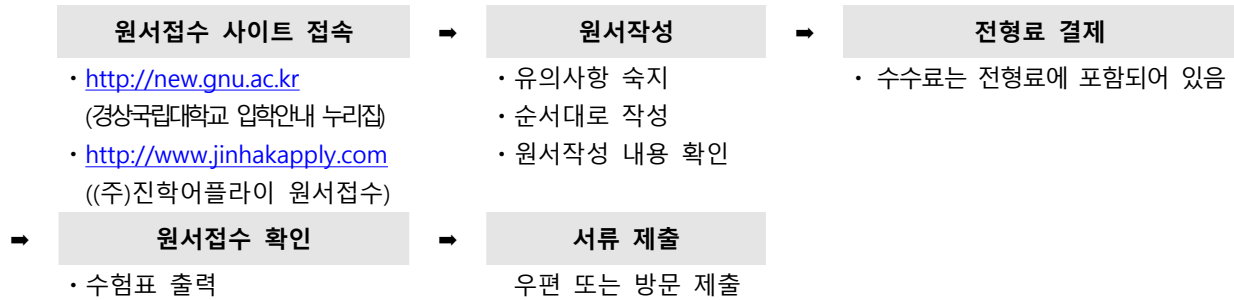
9. 원서접수 및 전형료

가. 인터넷 원서접수

1) 원서접수 대행사: (주)진학어플라이

2) 원서접수 기간: 2024. 7. 8.(월) - 7. 12.(금) 16:00

3) 원서접수 절차



4)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입학원서와 제출서류 검토 결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주의로 인한 입력 내용 누락이나 작성 오류, 출력물에 대한 확인불가 등의 경우,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의 입학원서 접수 부주의로 인한 지원학과 작성 오류 시 절대 변경 불가

나) 환불은행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행계좌이어야 하며,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학원서는 전형료 결제를 해야만 접수가 완료되며, 결제를 하지 않고 원서작성만 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형료 결제 완료 및 접수가 완료되어 **수험번호가 부여된 후에는 원서작성 내용의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하므로 결제하기 전 모든 작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는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마감일[2024. 7. 16.(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합니다.** 제출 마감 후에 제출한 자는 지원자격 미달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형일에는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수험표 분실 시 원서접수 사이트에 다시 로그인하여 수험표를 재출력 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범위: 주민등록증,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단,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사) 항상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나 주소, 보호자 성명 및 지원자와의 관계 등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불가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본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 접수가 완료된 서류,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p.16**의 전형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전형료 전부 또는 일부(원서접수 수수료 공제)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경상국립대학교 입학과 ☎055) 772-1115

※ 인터넷 원서접수 중 장애 발생 시는 (주)진학어플라이(☎1544-771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형료

(단위: 원)

구분	전형료 내역		합계
	일반전형료	면접고사료	
모든 학과	44,000	30,000	74,000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일반전형료에 포함되어 있음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됨):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면접고사료)
- 면접고사에 결시할 경우에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 반환

1.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
2. 위의 사유로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 원서접수 때 입력한 환불은행 계좌로 반환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반환 방법 중 환불은행계좌로 반환받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 이용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합니다. (단, 금융기관의 전산망 이용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10.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합격자 발표

구분	발표기간	발표장소
지원자격 심사결과 발표	2024. 8. 2.(금) 16:00 예정	• 본교 입학안내 누리집 (http://new.gnu.ac.kr) • 개별 통지하지 않음
합격자 발표	2024. 8. 30.(금) 16:00 예정	

나. 최초 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

구분	기간	납부방법
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	2024. 12. 16.(월) 09:00 ~ 12. 18.(수) 16:00	• 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기간 내 본교 누리집에서 확인(출력) 후 등록 • 문서 미등록 시 등록포기 처리

- 유의사항: 최초 합격자는 본교 입학안내 누리집 온라인 문서등록 안내에 접속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총원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 납부

구분	발표	
	일자	방법
총원합격자 발표	2024. 12. 19.(목) ~ 12. 26.(목) 18:00까지	개별 통지(전화발표)
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	2024. 12. 19.(목) ~ 12. 27.(금) 22:00까지	입학안내 누리집 확인

- ※ 총원 합격자 발표 일정은 입학전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으면 추후 본교 누리집에 공고함

라. (본) 등록금 납부

구분	기간	방법
고지서 출력 및 납부	2025. 2. 10.(월) ~ 2. 12.(수)	• 본교 입학안내 누리집(http://new.gnu.ac.kr)의 등록금 납부 페이지에서 출력(개별 통지하지 않음) • 정해진 기간 내 등록금 고지서 출력 후 가상계좌로 입금

단과대학 및 계열별 등록금 책정표 (※ 2024학년도 등록금 기준임)

대학	구분	계열	수업료
인문대학		인문·사회	1,633,000원
		인문·사회 (민속예술무용학과)	1,876,000원
사회과학대학		인문·사회	1,633,000원
자연과학대학		자연	2,012,000원
		공학	2,165,000원
경영대학		인문·사회	1,633,000원
공과대학		공학	2,165,000원
농업생명과학대학		인문·사회	1,633,000원
		자연	2,012,000원
		공학	2,165,000원
법과대학		인문·사회	1,633,000원
IT공과대학		공학	2,165,000원
우주항공대학		공학	2,165,000원
사범대학		인문·사회	1,633,000원
		자연·체육	2,012,000원
해양과학대학		인문·사회	1,633,000원
		자연	2,012,000원
		공학	2,165,000원
건설환경공과대학		공학	2,165,000원
		예능	2,208,000원

※ 경상국립대학교 통합에 따라 단과대학 및 계열별 등록금은 변경될 수 있음

마.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가) 본교에 등록 후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학처 누리집(<http://new.gnu.ac.kr>)에 접속 후 '입학도우미-원서접수/합격자 조회/환불-환불' 배너를 순서대로 클릭 후 '2025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환불 신청'의 '바로가기'를 클릭해 등록 포기 및 등록금 환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만 환불 신청이 가능

(나) 환불 신청 시에는 생년월일,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이 내용은 원서접수 시 기재 내용과 일치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다) 환불 은행 계좌번호 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원서 접수한 사이트(진학어플라이)에서 재확인하시고, 환불은 지원자가 원서접수 시 입력한 계좌 정보로 환불됩니다.

(라) 등록 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 후에는 번복할 수 없으므로 보호자와 충분히 상의 후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 등록금 환불 신청은 환불 완료까지 2~3일이 소요되므로, 본교 등록을 포기(환불)하고 타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환불 신청만 한 후, 바로 타 대학에 등록 가능합니다.

11. 대학생활 주요안내 (2024학년도 기준)

■ 학생생활관(기숙사) 운영

가. 신입생 모집 현황

- 1) 가좌캠퍼스(정원: 3,561명): 생활관 모집정원의 41.7%(1,485명) 내외에서 선발
- 2) 칠암캠퍼스 제1분관(정원: 950명): 생활관 모집정원의 50%(475명) 내외에서 선발
- 3) 칠암캠퍼스 제2분관(정원: 255명): 2학년(의예과, 간호학과)부터 선발, 1학년(의예과, 간호학과)은 가좌캠퍼스에서 선발
- 4) 통영캠퍼스(정원: 479명): 입실 희망자 전원 100% 선발(편입생 포함)

나. 입실 자격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 ※ 가좌캠퍼스 및 칠암캠퍼스 제1분관: 진주시 거주 학생 신청 가능(선발인원보다 신청인원이 초과할 경우 진주시 외 지역 학생 우선선발)

다. 선발기준

- 1) 가좌캠퍼스
 - 입학성적(총점)순
 - ※ 신입생 모집정원의 30%는 모집단위별 입학 성적순으로 우선 선발한 후, 나머지 70%는 전 학과를 대상으로 입학 성적순으로 선발(가좌캠퍼스)
 - 동점자의 경우에는 연소자를 우선 선발 및 배정함
- 2) 칠암캠퍼스 제1분관
 - 입학성적(70점) + 거리점수(30점) = 100점, 총점 상위자 순
 - 동점자: 1순위) 입학성적 상위자, 2순위) 원거리 거주자, 3순위) 연장자

라. 우선 선발

- 1)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국가보훈처 해당 증명서 제출)
- 2)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수급자증명서 제출)
- 3) 신체부자유로 통학이 극히 불편한 자(장애인증명서 제출)
- 4) 재외 한국인(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출입국 증명서), 단, 부모님이 국내 지역 거주자는 제외
- 5) 외국인 학생

마. 생활관비(2024학년도 1학기 기준) * 2025학년도에는 변동될 수 있음

1) 가좌캠퍼스(식비 별도)

- 일반 기숙사 546,250원~560,050원(생활관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음)
- BTL 기숙사 572,700원~673,900원(2인실 기준)
- ※ 식비: 1일1식(397,850원) ~ 1일 2식(664,900원) (1일 1식 이상 필수 선택) / 천원의 아침밥 사업으로 조식은 제외

2) 칠암캠퍼스 제1분관(식비 별도)

- 일반 기숙사 480,700원~737,150원(생활관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음)
- BTL 기숙사 809,600원(일반 2인실 기준)
- ※ 식비: 1일 1식(363,800원)~1일 3식(706,200원) 선택 가능(필수)

3) 칠암캠퍼스 제2분관(1일 2식 식비 포함. 일요일 제외): 1,796,940원(1인실) / 1,176,950원(2인실)

4) 통영캠퍼스(식비 포함/ 1일 3식)

- (일반형) 기숙사 1,063,000원~1,187,000원(인실에 따라 차이가 있음, 2~3인실)

- (원룸형) 기숙사 (여) 1,447,000원 (남) 1,500,000원(남·여 호실 내부시설에 차이가 있음)

바. 입실 기간

1) 1년 단위(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은 제외, 가좌캠퍼스 영어생활관(학점신청)은 학기 단위)

2) 1학기: 3월 개강 전 ~ 6월 종강일 / 2학기: 9월 개강 전 ~ 12월 종강일

사. 문의처

가좌캠퍼스	칠암캠퍼스 제1분관	칠암캠퍼스 제2분관	통영캠퍼스
055)772-0706	055)772-3201	055)772-8298	055)772-9211~9212
http://dorm.gnu.ac.kr			

■ 해외 프로그램(교환학생, 복수학사학위제)

■ 해외 학생교류 프로그램 및 복수학사학위프로그램

1) 내용 : 해외 교류대학에 교환학생, 복수학사학위제생 및 영어연수생으로 파견되어 어학연수, 학점 또는 학위취득

프로그램명	내용	문의처
교환학생 프로그램	해외 교류대학에서 1학기~1년간 수학하며 학점 과정 이수 및 외국어 능력 향상 (* 상대교 등록금 면제)	중국어권 (055-772-0275)
복수학사학위제 프로그램	해외 복수학위제 협정 대학과 우리 대학에서 각 2년간 수학 후 양 대학에서 각각 학사학위 취득 (* 상대교 등록금 면제)	
해외 영어연수 프로그램	영어권 교류대학에서 단기 또는 1학기간 학점 이수 과정 영어연수 실시 (* 파견 지원금 일부 지급)	중국 외 (055-772-0273)

2) 파견대학 및 선발인원

선발시기	프로그램	파견대학
매년 1월	하반기 일본 교환학생	간사이대, 규슈대, 나가사키대, 나고야대, 메이지대, 시마네대, 야마구치대, 오사카대, 오사카경제법과대, 고마자와대, 고치현립대
매년 4월	하반기 중국-대만 교환학생	(중국) 산둥대 제남, 산둥대 위해, 천진공업대, 청도대, 장수대 (대만) 중국문화대, 창화사범대, 불광대
	하반기 중국 복수학위제생	사천대, 청도대, 산둥대 위해
	하반기 유럽 및 아시아권 교환학생	독일 데겐도르프공과대, 라트비아 리가기술대, 스페인 말라가대, 자우메대, 프랑스 프랑슈-콩테대, 아비뇽대, 콩피예뉴공과대, 리옹2대, 카자흐스탄 유라시아국립대, 샤카림세메이국립대, 사르센 아만줄로프 동카자흐스탄대, 인도네시아 비누스대
매년 8~9월	상반기 영어권 교환학생	미국 피츠버그주립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과학대, 체코 프라하생명과학대학
	상반기 일본 교환학생	간사이대, 규슈대, 나가사키대, 나고야대, 메이지대, 시마네대, 야마구치대, 오사카대, 오사카경제법과대, 고마자와대, 고치현립대
	상반기 유럽권 교환학생	독일 함부르크대, 데겐도르프공과대
매년 10월	상반기 중국 교환학생	요녕과기대, 화중과기대, 청도과기대, 청도농대, 장춘이공대, 장춘사범대
매년 5월, 10월	방학 및 학기제 영어연수생	필리핀 라살아라네타대, 미국 네바다대학-라스베이거스 등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12. 각종서식

■ 서식 1 ■ ※ 인터넷 접수 후 출력

2025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원서

지원자격구분		수험번호		※				
지원사항		대학		학과(부)				
지원자	성명	한글(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출신고교	년 월 일		고등학교 (졸업예정□, 졸업□)				
	고교 졸업학년도가 시작(3학년 1학기)된 날		년 월 일					
연락처	국내	주소 (우)						
		전화		휴대폰				
		e-mail						
		*가능한 연락번호 모두 기재 바람 (※ 국내 주소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연락처의 불명 및 연락 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국외	주소						
		전화		휴대폰				
국외체류	관계	수학/체류국가	국외 재학 / 체류 기간		재학/체류년수	국적	근무처	직위
	지원자		체류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수학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부		체류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근무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모		체류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근무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전형료 환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위 기재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귀 대학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경상국립대학교총장 귀하							지원자	인

수험표

2025학년도 경상국립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수험번호	※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지원자격 구분		
모집단위	대학	학과(부)
사진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3cm X 4cm)		

경상국립대학교

※ 유의사항

1. 면접고사 시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에 접속하여 재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일정】

구분	일시	장소
지원자격 심사결과 발표	2024. 8. 2.(금)	입학안내 누리집 (http://new.gnu.ac.kr)
면접고사	2024. 8. 8.(목)	해당학과 지정장소
합격자 발표	2024. 8. 30.(금)	입학안내 누리집 (http://new.gnu.ac.kr)
합격자 등록	2024. 12. 16.(월) ~ 12. 18.(수)	경상국립대학교 입학안내 누리집에서 고지서 출력 후 가상계좌로 납부
(본)등록금 납부	2025. 2. 10.(월) ~ 2. 12.(수)	

■ 서식 2 ■ ※ 인터넷 접수 후 출력 (전.출입이 빈번하여 인터넷 접수시스템에 입력하기 어려운 경우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수 학 기 간 기 록 표

[illegible]

■ 초.중.고 수학기간 기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까지 연도별 순서에 의해 수학한 모든 학교 기재]

학교명	학교소재지		재 학 기 간				해당하는 학년, 학기에 (●) 표시 (한 학기를 완전히 끝내지 못했을 경우 ▲표시)																												
	국가명	도시명	기 간				재학년수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초	한국	서울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초	한국	서울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중	한국	서울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school	중국	무석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고	한국	서울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총 재학기간				12년	개월	외국학교 재학기간				2년				개월	국내학교 재학기간				10년				개월									
교포학생 기재란	영주국() 영주권번호 및 취득일 (, 년 월 일)		최초 출국일(년 월 일)				최종 귀국일(년 월 일)																												

※ 재학기간은 재학증명서 상의 기간을 기재함

■ **특이사항** (월반, 조기졸업, 학기 성적기록 누락, 휴학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만 아래의 표에 기재)

내 용	기 간	학년 / 학기	사 유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이
유
기

지원자

(인 또는 서명)

부모 외국 체류기간 기록표

수험번호	
지원학과	
성명	

☐ 부모 외국 체류기간 기재 (학생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에 부모가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을 기재)

구분	외국 체류기간		소재지		보호자의 외국 체류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학년, 학기에 (●) 표시 (한 학기를 완전히 끝내지 못했을 경우 ▲표시)																	
	기간	체류년수	국가명	도시명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부(父) 성명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X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X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X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X																	
	계	년 개월			X																	
모(母) 성명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X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X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X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X																	
	계	년 개월			X																	
교포 기재란(부)	영주국() 영주권번호 및 취득일 (, 년 월 일)	최초 출국일(년 월 일) 최종 귀국일(년 월 일)																				
교포 기재란(모)	영주국() 영주권번호 및 취득일 (, 년 월 일)	최초 출국일(년 월 일) 최종 귀국일(년 월 일)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지원자: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

(Affidavit of Financial Support)

지원자 성명			수험번호	
모집단위				
재정보증인	성 명			
	직 업			
	주 소			
	연락처			
지원자와의 관계				

※ 재정보증인은 지원자의 '부' 또는 '모'를 원칙으로 함

본인은 상기 지원자의 유학기간 중 일체의 경비 부담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재정보증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경상국립대학교총장 귀하

제3국 수학인증서

수험번호	
성명	
지원학과(부)	
지원자격구분	

학생재학국	
보호자근무국	
제3국수학기간	년 월 일(학년 학기) ~ 년 월 일(학년 학기)

중·고교 기간 중에 보호자의 근무 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수학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관련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하십시오. (해당자만 작성)

■ 서식 6 ■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출력 및 작성 후 서명하여 제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22. 12. 29.>

(앞쪽)

사실증명 발급 · 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Free online application available at the government website (www.gov.kr) for the issuance of your own Certificate of Fact. Those visiting an immigration office will be required to present only their ID cards without having to complete this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Please fill out this form by referring to the notes on the back page.)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Date of Receipt)	발급일 (Date of Issuanc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홍 길 동 연락처 (Phone No.) 000-0000-0000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o.) 000000-0000000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 copy(ies)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copy(ies) ☐ 외국인등록 열람 ()건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time(s)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 신청 여부 (국민만 해당) * This field is only for Korean citizens.	☐ 포함 ☐ 미포함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체류지 및 체류자격 변경 이력 포함 여부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umber), name, address or status of sojourn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 포함 Yes ☐ 미포함 No - 과거 성명 변경 사항 Previous Name ☐ 포함 Yes ☐ 미포함 No -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 포함 Yes ☐ 미포함 No - 과거 체류자격 변동 사항 Previous Status of Sojourn ☐ 포함 Yes ☐ 미포함 No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Departure Record)
 . . . 부터(from) . . . 까지(to)

용도 (Purpose)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경상국립대학교 연락처 (Phone No.) 055-772-0292	생년월일(Date of Birth) 20 . . .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경상국립대학교 입학 관계자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 · 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OO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장 / OO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읍 · 면 · 동의 장 /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OO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the Head of OO Si · Gun · Gu or Eup · Myeon · Dong / the Head of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 · 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 (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issuance of / access to the Certificate of Fact.

년(Year) 월(Month) 일(Day)

발급 · 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	--

210mm × 297mm [백상지(80 g / m²) 또는 중질지(80 g / m²)]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complete the shaded sections, and please place a check mark for applicable brackets[].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앞쪽 신청인의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전화번호란에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각각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ligible applicants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다음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의 사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3,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가.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1)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2)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Where a principal is incapable of expressing intentions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where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benefits of the principal:

- 1)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 2)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only when the spouse is deceased and the principal does not have any of those listed in the category 1)]

- 나.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a non-Korean principal has permanently left Korea:

- An employer of the principal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 다.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Where a favorable ruling is confirmed in a trial on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here the Certification is needed by financial companies that fall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the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Resident Registration Act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overdue debts, or where there is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concerned (only when a debt becomes overdue or a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allows a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an original due date,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Creditor who intend to receive or access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f the foreigner concerned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fixed date stamp affixed on the agreement, etc.

- 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public interest.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s shall present his/her own ID card and the application shall be presente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the ID card (or a copy) of the authorizing person.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You may be subject to punishment under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or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by submitting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another individual or falsely done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shall remain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authorization.

7. 국민은 1961.1.1.부터, 외국인은 1979.1.1.부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가능합니다.

Records on this certificate only cover the entry/departures from January 1, 1961, for Korean nationals and from January 1, 1979, for Foreigners.

해외 학교 학기 기록표

수험번호	
지원학과(부)	
성명	

학교명	학기 시작 및 종료일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학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학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학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학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학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학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학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학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학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학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학교명: 반드시 공식 명칭을 기재하되, 해외 소재 중·고교만 기입함

※ 3학기, 4학기의 경우 3학기제 혹은 4학기제 학교의 경우만 기입(2학기제 학교의 경우 3, 4학기란은 기재하지 않음)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4년

월

일

지원자

(인 또는 서명)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서

지원자격 구분		지원학과(부)	
수험번호		성명	
■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 증빙자료:			
위 기재 사유는 틀림이 없으며, 허위 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보호자:	(서명)
		지원자:	(서명)
경상국립대학교총장 귀하			

학과사무실 및 학사안내 연락처

(055-772-아래 내선번호)

단과대학	모집단위	내선번호	단과대학	모집단위	내선번호
인문대학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1120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	1840
	영어영문학부 영어전공	3440		동물생명융합학부	1880/3260
	국어국문학과	1020		식품공학부	1900/3270
	독어독문학과	1040		원예과학부	1910/3250
	러시아학과	1050		축산과학부	1940/3280
	민속예술무용학과	1170		환경사립과학부 (산림환경자원학전공/산림융복합학전공)	1850
	불어불문학과	1060		농학과	1870
	사학과	1080		스마트농산업학과	3220
	중어중문학과	1180		식물학과	1920
	철학과	1150		환경생명화학학과	1960
	한문학과	1160		환경재료과학과	1860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1220/3420	법과대학	생물산업기계공학과	1890
	사회복지학부	1240/3870		지역시스템공학과	193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290		법학부 (법학전공/법조법학전공)	2020
	사회학과	1250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2140
	심리학과	1260		일어교육과	2200
	정치외교학과	1270		체육교육과	2290
자연과학대학	행정학과	1280	해양과학대학	해양수산경영학과	9160
	생명과학부	1320/1340/1350		해양식품생명과학부 (해양식품공학전공/수산생명과학전공)	9140/9290
	수학물리학부 (수학전공/물리전공)	1400/1420		해양경찰시스템학과	9180
	식품영양학과	1430/3270		해양생명과학과	9150
	의류학과	1450		기계시스템공학과	9100
	정보통계학과	1460		스마트에너지기계공학과	9110
	제약공학과	3390		조선해양공학과	9190
	지질학과	1470		해양토목공학과	9120
	항노화신소재공학과	3220		해양환경공학과	9130
경영대학	화학부	1480	건설환경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	3290
	경영학부	1520/3450		인테리어재료공학과	3360
	회계세무학부 (회계학전공/세무학전공)	1550/3430		조경학과	3300
	경영정보학과	1530		환경공학과	3340
	국제통상학과	1540/3890		디자인비즈니스학과	3370
	스마트유통물류학과	3660		메카트로닉스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스마트전력공학전공)	3380
공과대학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건축시스템공학전공)	1750/3400	IT공과대학	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융합전자공학전공)	1720
	나노·신소재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1650		컴퓨터공학부 (컴퓨터학전공/ICT융합전공)	1380
	나노·신소재공학부 금속재료공학전공	1660		반도체공학과	1730
	나노·신소재공학부 세라믹공학전공	1680		소프트웨어공학과	1370
	산업시스템공학부 (산업공학전공/산업정보공학전공)	1690		전기공학과	1710
	건축학과	1760		제어로봇공학과	1740
	도시공학과	1770	우주항공대학	시정정보공학과	9170
	미래자동차공학과	3640		항공우주공학부 (항공우주시스템공학전공/항공우주모빌리티전공)	1640
	에너지공학과	3880	기타 문의	등록금(재무과)	0394
	토목공학과	1790		장학·학자금(학생과)	0175
	화학공학과	1780		학사·수업(학사지원과)	0142
				기숙사(가좌)	0706